

등록번호	기획2602-16C-003
등록일자	
결재일자	2026.02.19
공개구분	공개

담당	팀장	처장	총장
성주연	이승근	김용재	김종완
			

대학평의원회 회의 개최

1. 관련근거 : 대학평의원회 규정 제6조(심의사항)
2. 위와 관련하여 우리 대학에서는 대학평의원회 회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재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가. 일시 : 2026.02.26.(목), 11:00

나. 장소 : 대학본부 4층 회의실(A402호)

다. 안건

- 1) 2026학년도 교육과정 개편(안) 자문
- 2) 학칙 개정(안) 심의

라. 사전통지 일자 및 방법

- 1) 사전통지 일자 : 2026.02.19.(목)
- 2) 통지 방법 : 문자, 전화 안내 및 홈페이지 공지

붙임 : 관련근거 사본 1부. 끝.

기획조정처 전략운영팀



대학평의위원회 규정

규정번호	VIII-01-B02-02
개정일자	2024.04.29.
제정일자	2007.01.31.
담당부서	전략운영팀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교법인 동남학원(이하 “법인”이라 한다) 정관 제13조(대학평의위원회 설치)규정에 의거 대학평의위원회(이하 “평의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 및 자격) ①평의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11인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, 각 구성단위의 평의원 정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교원 - 4명
2. 직원 - 3명
3. 조교 - 1명 <신설 2020.11.27.>
4. 학생 - 1명
5. 동문 - 1명 <개정 2020.11.27.>
6.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- 1명

②평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호 중 어느 한 호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위원은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하는 자로 선정되되 합리적인 절차로 선정하여야 하며, 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별표1을 따른다.<신설 2018.02.01.>

제3조(임기) ①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②학생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<개정 2018.12.27.>

제4조(임원) ①평의위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.

②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위원회에서 호선되되,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.

③의장은 평의위원회를 대표하고, 회의를 주재하며,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,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.

④의장은 회의 진행 및 의원간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평의원 중에서 총무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.

제5조(평의원의 해촉) ①평의원에 위촉된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평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해촉할 수 있다.

1. 평의원이 그 선출된 단위의 직(교원, 직원, 학생)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
2. 평의원에 위촉된 자가 금고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
3. 본인의 원에 의해 평의원을 사임하는 경우
4. 기타의 사유로 평의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

제6조(심의사항) 평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다만, 제3호, 제6호 내지 제7호의

경우 각각 자문에 한한다. <개정 2020.04.13>

1.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
2. 학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3.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
4. <삭제>
5. <삭제>
6.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7. 대학현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
8.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
9.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7조(회의) ①평의위원회의 회의는 총장, 의장 또는 재직 평의원 1/3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. 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일 7일 전까지 의원 및 교내구성원에게 의안을 명시하여 사전 통지하고 사전 설명할 수 있다.<개정 2018.01.10.>

②평의위원회는 재직위원 2/3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의원 1/2이상의 찬성으로 심의 또는 자문의결한다. 부득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평의원은 의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출석으로 간주한다.<개정 2024.04.29>

③심의 결과 표결시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
④평의위원회는 모든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며, 의장 및 간사는 회의록에 간인 또는 간서명하여야 한다.<개정 2024.04.29>

⑤회의록은 회의일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하며, 전략운영팀(기획조정처)에서 보관한다. 다만,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학평의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<신설 2018.01.10, 개정 2018.12.27>

1.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
2. 심의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
3. 그 밖에 공개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8조(사무지원) ①평의위원회의 사무는 전략운영팀(기획조정처)에서 지원한다.

<개정 2015.12.21.>

②의장은 회의록 작성 및 평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인의 간사를 둔다.

제9조(개방이사 및 감사 추천) <2015.03.04 삭제>

제10조(개방이사 및 감사 후보자) <2015.03.04 삭제>

제11조(세부사항) 평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평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7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.